

짧게나마 노숙인 사업의 전개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그간 응급구호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노숙인 사업이 노숙의 문제가 장기화 구조화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사업다운 면모

와 전문적인 사회복지적 개입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봉사와 헌신”만이 강조되었던 시기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열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참여하였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떠났지만, 그간 노숙인 보호사업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일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노숙인 사업에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다. 노숙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SW

동정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완화

아동복지시설장 경력조항 삭제

아동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총무의 자격기준을 현행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또는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완화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경과조치 기간을 2009. 7. 29일로 2년 연장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승인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 및 권한을 지방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통합 및 완화하여 시설 설치 신고를 유도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도 2005년까지에서 2007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면 지역 사회 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시설장들에 대한 문제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시설장이 난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SW

현행 및 개정(안) 시설기준

(단위:m²)

시설	현행	개정(안)
공동생활가정	82.5	60
지역 사무실	16.5	82.5
아동 조리실/식당	33	
센터 집단지도실	33	

출처 : 서울사회복지사 제68호